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등칙 제

- 제4조(평가대상 기간)
- 제5조(평가기준)
-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 제9조(안전·보건조직 평가)
- 제10조(가점 부여)
-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 제12조(평가방법)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4조(재검토기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 2020. 1. 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전담 조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등

제4조(평가대상 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표 1 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그 밖의 건설업체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①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수}}{\text{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② 평가대상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자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직 평가) 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직 평가 시 건설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가점 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 5점
2.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 2점

② 평가 시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사업주가 건설업체(본사 및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되거나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호,2020.1.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